

의성군의회 공고 제2021-31호

의성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의성군의회 의장



의성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의성군 소속공무원” 을 “의회 소속 공무원” 으로 변경
(안 제2조, 제3조)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3일까지 의성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우편번호 : 37337】

의회사무과 (☎ 054-830-6391)

의성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의원”을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성군 소속공무원”을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성군 소속공무원”을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지급기준)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별표6에 따른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의원 ----- ----- ----- -----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u>의원</u> 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을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 ----- ----- <u>의성군의회의</u> <u>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 -----.
②의원의 의정활동비는 <u>의성군 소속공무원</u> 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u>매월 의회</u> <u>소속 공무원</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생략)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의원의 월정수당은 <u>의성군 소속공무원</u> 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u>매월 의회</u> <u>소속 공무원</u> ----- ---.

제5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별표 1]의 국내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별표 2]의 국외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동조의[별표 1]및[별표 2]를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지급기준)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6조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